

---

- 2023년 연천군 종합감사 -  
감사결과보고서

---



2024. 2.

경 기도  
[감 사 관]

# ■ 목 차 ■

I . 감사실시 개요 .....	1
II . 감사대상기관 현황 .....	2
III . 감사결과 .....	3
① 감사결과 총괄 .....	3
② 종합의견 .....	3
③ 주요 지적사항 .....	4
④ 우수공무원 선정 .....	7
⑤ 향후계획 .....	8
IV 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.....	9
① 본처분 .....	9
② 현지처분 .....	10

**【별 첨】** 처분요구서

# I

## 감사실시 개요

### 1. 감사배경 및 목적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85조 및 제190조 등에 따라 2017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연천군을 「2023년 감사 기본계획」에 반영하여 종합감사 시행 ※ 연천군 지난 감사: 2017. 11. 27. ~ 12. 7.(9일간)
- 기회의 경기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여 각종 정책이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이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

### 2.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

- 감사대상: 연천군 (소속기관 포함)
- 감사범위: 2018. 1. 1. 이후 업무 전반 (위임사무 자료요구 2021. 1. 1. 이후)
- 중점사항
  - 도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·관행 최우선 해결
  - 민생 최접점의 인·허가, 안전,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 감사
  - 보조금, 예산 등의 부적정 청구 및 운영에 대한 감사로 재정 건전성 제고

### 3. 감사실시 과정

- 사전준비: 감사자료 수집 (2023. 10. 11.), 연천군 관계자 면담 (2023. 10. 13.)
- 감사기간: 2023. 11. 20. ~ 11. 28.(7일간) ※ 사전조사: 10. 18. ~ 11. 17.(23일간)
- 감 사 반: 감사담당관(감사단장) 등 3개팀 18명 ※ 도민감사관 별도: 19명

### 4. 감사결과 처리

- 법고창신(法古創新) 마감회의: 2023. 11. 28. ※ 연천군 부군수 등 참석
- 실무검토위원회(훈계이하): 2024. 1. 10. ~ 1. 11. (서면)
- 감사결과심의회(징계조정): 2024. 1. 17.

## II

# 감사대상기관 현황

### 1. 일반현황

-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중심 거점지로서 성장 잠재력 보유, DMZ를 접한 수도권 최적의 생태관광도시이며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」, 「수도권 정비계획법」 등 중첩규제 지역

- 인구, 면적 등 일반현황

(2023. 11. 1. 기준)

인 구	면 적	행정구역 수
41,639명 (경기도 인구의 0.3%)	677.9km <sup>2</sup> (경기도 면적의 6.6%)	2읍 8면 98개 리 647반

### 2. 조직 및 인력

- 조 직: 1실, 2국, 2담당관, 17과, 2직속기관, 2사업소, 1의회, 137읍면

- 인 력: 정원 746명 / 현원 738명 (공무원 1인당 주민수 56명)

◦ 본청 407/412, 의회 15/18, 직속기관 127/128, 사업소 52/51, 읍·면 137/137

### 3. 재정규모

- 예산규모 (2023년 본예산 기준)

(단위: 백만 원)

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
618,607	553,053	65,554	15.05%	71.66%

### 4. 주요사업 현황

-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(2023~2027년, 40,000백만 원)
- 경원선 전철 개통 (2009~2024년, 532,700백만 원)
- 연천 BIX(은통일반산업단지) (2021~2026년, 153,400백만 원)
- 국지도78호선 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(2015~2025년, 17,771백만 원)

### III

## 감사결과

### 1. 감사결과 총괄

○ 2023년 연천군 종합감사 지적사항 현황

(단위: 건, 명, 백만 원)

행정상					신분상				재정상		
구분	계	주의	시정 (기관경고)	기타	계(건)	중징계	경징계	훈계	계(건)	추징 등	회수
본처분	39	17	21 (1)	1	32 (16)	-	3	29	158 (6)	151	7
현지처분	2	1	1	-							

※ 지난 감사(2017년): 행정상 68건(주의 29, 시정 35, 개선.권고 4), 신분상 40명(징계 1, 훈계 39), 재정상 218,116백만 원

### 2. 종합의견

○ 이번 연천군 종합감사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감사로서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, 직전 감사에 비해 총 지적건수, 신분상 처분요구 건수가 모두 감소함

※ (행정상) 2017년 68건 ⇒ 2023년 41건, (신분상) 2017년 40명 → 2023년 32명

○ 공공부문에서는 ○○○○분야 보조사업자가 정산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, 소상공인 보조사업을 공모절차 없이 추진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하였음

○ 자치사무에서는 숙박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을 위법하게 생활숙박 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하여 생활숙박업으로 등록 처리하였고, 이원화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는 담당자 간 칸막이 행정으로 과징금 부과 시기를 일실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등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

○ 또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관리,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 도민안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 미적용,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 등 민생 최접점에서 안일한 업무처리로 도민 불편을 초래함

○ 향후에도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자치사무 분야 등에서 감사공백이 우려되는 만큼, 시군 행정의 모니터링 및 감사기능 강화 방안 강구 필요

### 3. 주요 지적사항

#### 1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및 생활숙박업 신고 처리 부적정

- 가과는 2021. 11. 2. 이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는 「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」에 적합한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용도변경 허가하여야 했는데도, 이를 확인하지 않고 용도변경 허가 처리
- 다과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생활숙박업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자로부터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제출받지 않고, 건축물대장만 확인하고 수리하여 「공중위생관리법」등 관계법령 취지 훼손

#### 조치 사항

- 건축법령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가 및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 변경 업무와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생활숙박업 신고수리 업무 철저와 생활숙박시설의 사용 전 단계부터 관련 법령을 소관 하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, 건축법령을 위반한 생활숙박시설 2개소와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생활숙박업소 4개소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·영업 될 수 있도록 조치 (주의·통보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경징계 ○명, 훈계 ○명)

#### 2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 태만

- 가과는 점인 업무처리 시 접수되는 판결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관련 조사를 소홀히 하여 과징금을 미부과
- 또한, 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이 접수되었으나 업무 이원화로 전달되지 않았고, 조사담당자는 이를 방치하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(5년)이 경과되어 재정상 손실 초래

#### 조치 사항

-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누락되지 않도록 판결서등 관계서류의 조사 철저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(기관경고)
-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미부과된 과징금 1,835,000원 부과 (시정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훈계 ○명)

### 3 ○○ ○○ 분야 보조금 정산 자료 검사 소홀

- 가과는 ○○ ○○ 분야 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2022년 ○○ ○○ 분야 보조금 정산자료 중 일부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사용액으로 인정하는 등 정산자료 검사를 소홀히 함

조치 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 기준」 및 「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관리 업무 철저 (주의)
- 발급 사실이 없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「조세범 처벌법」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이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 마련과 고발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을 검토 조치 (통보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훈계 ○명)

### 4 관급자재(순환골재) 구매 부적정

- ◇◇◇사업소는 2회에 걸쳐 관급자재(순환골재) 구매를 위한 2인 이상 수의견적공고에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와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

조치 사항

- 관급자재 구매 관련 업무 철저 (주의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훈계 ○명)

### 5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검토·처리 부적정

- 가과는 영업자가 제출한 식품제조가공 품목제조보고를 검토하면서 제품명이나 성분을 기재하지 않아 개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검토할 수 없거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, 그 중 일부(25kg)가 유통·판매되어 먹거리 안전에 불신 초래

조치 사항

- 관내 품목제조보고 사항에 대한 첨가물 등 기준 규격 적합 여부 검토 철저 (주의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훈계 ○명)

## 6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 업무 미수행 등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

- 가과와 다과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설계용역 2건을 발주하면서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건축분야 전문가 등에게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의뢰하지 않았고,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의뢰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용역 추진

조치 사항

- 공공건축 사업 설계용역 발주 시 설계비 추정가격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,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(주의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훈계 ○명)

## 7 인·허가 업무처리 시 「부동산개발업법」 위반

- 가과 등 4개 부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19건의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부동산개발업자가 공급(판매·임대)하는 것인지,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·허가를 처리하였으며,
- 부동산개발업 무등록자는 개발과정 도중에 타인에게 인·허가 명의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이 불가한데도 1건의 명의변경을 허가

조치 사항

-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」을 위반하여 인·허가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 인·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○○○○ 등 19건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(공급외 목적) 대상 확인서 및 관련 인·허가 서류 사본을 경기도에 통보하기 바람 (시정)
-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 인·허가 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(인·허가 명의변경 등 사업주체 변경)한 ○○○○법인에 대해 경기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고발 조치 등 적절한 조치 방안 마련 (통보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훈계 ○명)